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6년 6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, 기구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신 설 : 1건

<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시장·군수 위임사무 신설>

- (투자유치과) 청주관내 산업단지(4개소) 관리권한 청주시 위임(1건)

- 삭 제 : 2건

<법령개정에 따른 권한 이양 : 도지사 → 시장·군수>

- (경제정책과)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 (2건)

※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45조 개정

- 그 밖의 개정사항 : 9건

<인사행정 효율화를 위한 위임범위 및 대상기관 정비>

- (총무과)

-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과 직속기관,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,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(전보권) 정비(8건)
- 위임범위 : 지방5급→5급, 지방공무원→일반직공무원, 지방연구관→연구관
- 위임대상기관 : 5.도로관리사업소장~12.남부출장소장→당해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

<과 명칭 변경 : 대응구조구급과→대응예방과>

- (소방본부) 조직개편('16.1.1)에 따른 과 명칭 변경

4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안은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, 기구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별로 살펴보면,
 -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됨으로써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청주시 관내에 있는 4개 산업단지(KGB 복합, 옥산, 오창 제2, 오창 제3산업단지)의 관리권한을 청주시에 위임하는 것과
 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 45조의 개정으로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가 도지사의 사무에서 시장·군수의 사무로 권한이양이 되어 사무의 위임조례에서 삭제하는 것과,
 - 충청북도 소방본부 조직이 2016. 1. 1일자로 개편됨에 따라 “대응구조구급과” 를 “대응예방과” 로 변경하고

-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과 직속기관,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,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(전보권)를 “지방5급”에서 “5급”, “지방공무원”을 “일반직공무원”으로 확대하여 전보대상자에 국가직공무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○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